#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30 발의연월일: 2025. 4. 22.

발 의 자: 장종태·박용갑·김병기

위성곤 • 김문수 • 박지원

김남근 • 권향엽 • 허성무

황운하 • 이재관 • 신장식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해야 하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음. 그 조치 중 하나로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법 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취약계층 의 보호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혹한 등의 이상기온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별 대책에

안전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등).

법률 제 호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축"을 "구축, 안전취약계층의 보호"로 한다.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 층(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 폭염피해 보호대책 마련 제33조의4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축"을 "구축, 안전취약계층의 보호"로 한다.
  - 3. 안전취약계층 한파피해 보호대책 마련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		
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	감 조치) ①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			
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			
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하 "안전취약		
	계층"이라 한다) 폭염피해 보		
	호대책 마런		
<u>3.</u> ~ <u>5.</u> (생 략)	<u>4.</u> ~ <u>6.</u> (현행 제3호부터 제5		
	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③		
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			
을 마런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			
방 및 대응체계 <u>구축</u> 등 대통	<u>구</u> 축, 안전취약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	계층의 보호		
하여야 한다.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		
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	감 조치) ①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			

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 야 한다.

1. • 2. (생략)

<신 설>

<u>3.</u> ~ <u>5.</u> (생 략)

- ② (생략)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역별 한파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u>구축</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3. 안전취약계층 한파피해 보호
대책 마련
<u>4.</u> ~ <u>6.</u> (현행 제3호부터 제5
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축, 안전취약
계층의 보호